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약관】

문의 1566-8899 / www.8899.or.kr

Kbiz

대한민국 99%의 힘
중소기업중앙회

꼭 알아두실 사항

목 차

- 꼭 알아두실 사항 2
- 주요 공제용어 설명 3
- 공제가입자를 위한 안내서
 -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4
 - 2. 공제부금의 납부의무 4
 - 3. 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5
 - 4. 공제금의 산정 및 청구절차 5
 - 5. 부가공제금의 산정 8
 - 6. 해약환급금의 산정 9
 - 7.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제도 11
 - 8. 공제가입자 보호제도 11
 - 9. 단체보험의 가입 12
- 공제계약약관
 -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3
 - 제2관 공제부금의 납부(계약자의 주된 의무) 16
 - 제3관 공제금의 지급(중앙회의 주된 의무) 18
 - 제4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21
 - 제5관 공제계약대출 25
 - 제6관 분쟁조정 등 27
 - <약관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28
 - <약관별표 2>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29
 - <약관별표 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30
 - <약관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 35
 - <약관별표 5> “수취이율표” 37

- 이 약관은 공제계약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기타 중요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제용어 설명

공 제 약 관	계약의 성립시부터 소멸시까지 중앙회와 계약자간의 권리의무조항을 명시한 일반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입니다.
공제가입증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중앙회 발행의 증서를 말합니다.
(공제) 부 금	계약자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 금 월 액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약정한 부금액을 말합니다.
부 금 구 분	부금월액을 매 10,000원 단위로 구분한 각 구분을 말합니다.
부금납부기일 (지정일)	계약자가 부금월액을 매월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공 제 금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가입자를 위한

고객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안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공제부금의 납부의무

- 계약자는 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금월액을 매월 지정하신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금월액의 종류는?
부금월액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66종이 있으며 청약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 부금의 만기가 있는지?
이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사업의 폐지, 법인의 해산, 계약자의 사망 또는 법인대표의 퇴임) 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년) 이상인 때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노령급부사유가 되므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금연체시의 처리는?
부금을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금을 12회 이상 연체하면 공제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부금연체이율 : 연 복리 4%입니다.
- 부금을 선납할 수 있는지?
해당 연도의 부금을 6개월분까지 납부기일 이전에 선납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액의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부금납부액을 300만원을 한도로 해당 연도의 종합 소득에서 공제(控除)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적용기간 : 2010년 12월 31일 까지

3. 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기준이율이란?
공제금의 지급률 및 기타 각종 지급수취이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 중앙회에서 매년 초에 정하여 1년간 확정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기준이율의 최저한도(최저보증이율)는?
기준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연 복리 2%를 최저로 합니다.
- 이자의 계산방식
이 계약에 관한 제 이자의 계산방식은 연 단위 복리로 합니다.

4. 공제금의 산정 및 청구절차

- 공제금의 지급사유는?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사유대상	공 제 사 유	사유 구분 (공제금)
사 업 체	폐 업	A공제사유 (A공제금)
	법 인 해 산	
계 약 자	사 망	B공제사유 (B공제금)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노령급부청구	

- 공제금의 지급기준은?

■ 약관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1란 (부금납부월수구분)	제2란 (A공제금) (약관 제18조 제2항제1호 전단)	제3란 (B공제금) (약관 제18조 제2항제1호 후단)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3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50%	납부부금의 50%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의 80%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7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차등지급이율표」의 지급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 차등지급이율표

번호	적 용 (부리) 기 간	지급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공제금의 청구는?

■ 공제금 지급 대상자

공제사유대상	공 제 사 유	지급대상자
사 업 체	폐 업	계 약 자
	법 인 해 산	
계 약 자	사 망	계약자의 상속인
	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계 약 자
	노령급부청구	

■ 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공제금등 청구서
- ② 공제가입증서
- ③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 ④ 공제사유 증빙서류 (각 공제사유별)

○ 공제차익에 대한 과세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 15.4%

이자소득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금 - 납부부금(원금)
(공제차익)

5. 부가공제금의 산정

○ 부가공제금이란?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가정공제금」에 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부가공제금의 산출식

가정공제금(1년 경과시)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제1회차 부가공제금
가정공제금(2년 경과시)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제2회차 부가공제금
가정공제금(3년 경과시)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제3회차 부가공제금
.....
가정공제금(n년 경과시)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제n회차 부가공제금
.....
가정공제금((n+n)년 경과시)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제(n+n)회차 부가공제금
.....
가정공제금(최종년도) × 부가지급률(해당연도) = 제 χ 회차 부가공제금 +)
Σ (SUM) = 부 가 공 제 금

○ 부가공제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리

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 이자가 부리됩니다.

○ 준공제금에 대한 부가공제금

간주해약환급금(일명“준공제금”)에 대해서도 3년이 경과한 이후(제4회차 부가공제기준일)부터는 매 부가공제기준일에 부가공제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금이 발생됩니다.

6. 해약환급금의 산정

○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는?

약관에서 정한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구분	해 약 사 유		해약환급금 구분
간주해약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대표 취임	일반해약환급금
		대표 불취임	
	개인사업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		간주해약환급금 (일명“준공제금”)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대표의 퇴임		
임의해약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일반해약환급금
강제해약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일반해약환급금
	부정행위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일반해약환급금 (차등 적용)

○ 해약환급금의 지급기준은?

간주해약시와 일반해약시의 환급금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 약관 <별표 2> 간주해약환급금(일명“준공제금”) 지급기준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간주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3항제1호)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의 30%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간주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3항제1호)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납부월수가 37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부리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약관 <별표 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1란 (해약시의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1호)
1~12개월	납부부금의 30%
13~24개월	납부부금의 80%
13~24개월에 매 12개월 증가시마다	납부부금의 80% + 매 2.5%씩 증가
109~120개월	납부부금의 100%
109~120개월에 매 12개월 증가시마다	납부부금의 100% + 매 2.5%씩 증가
349~360개월	납부부금의 150%
349~360개월에 매 12개월 증가시마다	납부부금의 150% + 매 2.5%씩 증가
589개월 이상	납부부금의 200%

○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아래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 × 22%

기타소득(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금납부금액

다만,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천재·지변 ②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③ 공제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④ 공제사업자의 해산

7.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제도

-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이란?
이 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업(轉業)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 등의 경우에는 공제사유 또는 간주해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전(前) 계약의 부금납부월수를 후(後) 계약으로 합산하여 드림으로써 복리 적용의 혜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금통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 ① 사업체의 폐업 또는 법인해산
 - ② 법인대표의 퇴임 (질병·부상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한 경우)
 - ③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 부금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부금통산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입니다.
※ 다만, 공제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공제가입자 보호제도

- 계약취소 제도
공제가입자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중앙회는 납부 받은 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 청약철회 제도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청약금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중앙회는 납부 받은 청약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9. 단체보험의 가입

- 보장내용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를 위하여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를 3~100%)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까지입니다.
※ 탈퇴일 :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공제계약의 해지일
- 보험가입금액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합니다.
※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중앙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보 및 보상처리

- LIG손해보험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44-0114
- LIG타스단체보험(중소기업중앙회 전담)
전화 : 02)6900-3550, 3149-7355

이 약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내지 제121조에 따르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승낙으로 체결되며 공제계약의 체결로써 공제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계약자”, 중소기업중앙회는“중앙회”라 합니다)
- ②계약의 청약을 하려면 부금월액을 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청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청약금은 계약이 체결된 해당 월의 부금으로 충당됩니다.
- ③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 ④중앙회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일로 보며 그 날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중앙회가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청약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금을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중앙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부한 청약금을 돌려드리며,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2. 부금(또는 공제부금)
계약자가 이 계약에 따라 중앙회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부금월액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합니다.
- 4. 부금구분
부금월액을 매 10,000원 단위로 구분한 각 구분을 말합니다.
- 5. 부금납부월수
부금의 납부를 마치고 해당 부금월의 기간이 경과한 월수를 말합니다.
- 6. 부가공제기준일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을 말합니다.
- 7. 부금납부기일
계약자가 부금월액을 매월 납부하기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 8. 공제금
제17조(공제사유)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9.“해약환급금”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10.“공제계약대출”이라 함은 중앙회가 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에게 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제4조(공제가입대상)

- ①공제에 가입하려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계약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2. 계약일 현재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상법」상의 회사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 합니다)의 대표자를 말하며, 그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5조(공제가입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공제가입대상)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 부금의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4.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가.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 합니다)
 - 나. 무도장 운영업
 - 다. 도박장 운영업
 - 라.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제6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중앙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중앙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금을 돌려 드리며, 부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해지)

①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중앙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한 때
 2. 계약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 ③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간주해약사유”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제17조(공제사유)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때

제2관 공제부금의 납부(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부금월액)

부금월액은 최저 50,000원부터 최고 700,000원까지로 하되, 10,000원 단위로 합니다.

제9조(부금의 납부)

①계약자는 부금월액을 매 부금납부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금납부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부금납부기일로 합니다.

②부금월액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10조(부금월액의 변경)

- ①계약자가 부금월액의 증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 ②계약자가 부금을 3회이상 납입한 후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월액을 감액한 후 2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납부기한의 연장)

- 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금을 부금납부기일 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재해를 당하였을 때
 2. 입원자료중일 때

제12조(부금납부월수의 통산)

- ①중앙회는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후 15개월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을 한 때에는 전·후 계약의 부금납부월수를 통산합니다. 이 경우 중전의 계약은 소멸합니다.
 1. 제7조(계약해지)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간주해약사유
 2. 제17조(공제사유)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
- ②제1항의 부금납부월수의 통산신청과 동시에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공제가입대상)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부금선납)

계약자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연도분의 부금을 부금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금납부월 이전에 선납하는 부금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부금연체)

계약자가 부금을 연체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표5> “수취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5조(부금의 변제충당)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대출금(이하“공제계약대출금”이라 합니다)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납부부금을 공제계약대출금 또는 그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비부금반환)

계약자가 제7조(계약해지)제3항 각 호의 사유(간주해약사유) 또는 제17조(공제사유)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금명목으로 계속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중앙회는 그 금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중앙회의 주된 의무)

제17조(공제사유)

-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폐업(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다만, 제7조(계약해지)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제18조(공제금)

①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금은 각 부금구분의 구분공제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구분공제금은 다음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제17조(공제사유)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공제금 지급기준표”제1란의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 제17조(공제사유)제3호 또는 제4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표 제1란의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
2. 부가공제기준일에 제17조(공제사유) 각 호의 해당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이하 “가정구분공제금”이라 합니다)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③제2항제2호의 부가지급률은 매년마다 가정구분공제금의 총액, 공제자금의 운용수입액·예상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중앙회가 정하며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19조(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

- ①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자는 제17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의하여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결격)

- ①고의의 범죄행위로 계약자를 사망하게 한 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의 사망 전에 그 사망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를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게 한 자도 또한 같습니다.
- ②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자가 제1항의 범죄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지급받을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공제금 등의 반환)

중앙회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해당 공제금 등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공제금 등의 상계)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금 및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사망의 인정)

제17조(공제사유)제2호(사망)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4조(해약환급금)

- ①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 제7조(계약해지)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계약자가 동호의 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에 한 합니다)에는 각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별표 3>“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제2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2. 제7조(계약해지)제2항제2호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각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3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
 3. 제7조(계약해지)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계약자가 동호제1호의 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각 부금구분의 구분간주해약환급금의 합계액
- ③제2항제3호의 구분간주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별표2>“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제1란의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에 상응하여 동표 제2란에 기재된 금액
2. 부가공제기준일(제1회차부터 제3회차까지의 부가공제기준일은 제외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제7조(계약해지) 제3항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 금액(이하“가정구분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에 각 부가공제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18조(공제금)제3항에 따른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제4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기준이율의 결정 및 공시)

- ①이 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 이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이하“기준이율”이라고 합니다)은 중앙회가 정합니다.
- ②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여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기준이율은 중앙회가 정하는 날 부터 위 내용에 따라 다음 기준이율을 정하는 날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 ③기준이율의 최저한도(이하“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합니다)는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의 기재에 따릅니다.
- ④중앙회는 기준이율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제26조(공제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제17조(공제사유)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는 제7조(계약해지)제3항 각 호의 간주해약사유 또는 제17조(공제사유)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주소변경통지)

-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중앙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①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지급금·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이하“수급권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중앙회가 수급권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앙회양식)
 2. 공제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폐업증명서, 사망진단서, 질병·부상진단서, 퇴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3.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제2호의 사망진단서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 ①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중앙회는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공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중앙회는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수급권자는 제1항의 공제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중앙회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중앙회가 공제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1조(공제금의 분할지급)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공제사유)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계약자에게 제17조(공제사유)제1호 또는 제3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②계약자가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1항의 청구는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이하 “분할지급 대상액”이라 합니다)을 정하여야 합니다.

③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합니다.

④분할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이하 “분할지급기간”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 후 최초의 지급 월로부터 5년, 10년 또는 15년으로 합니다.

⑤분할공제금은 공제금(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대상액)을 분할지급횟수로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하며,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제1항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액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금 전액에서 분할지급대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2조(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

①중앙회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잔여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계약자가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잔여 분할공제금의 일괄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계약자

②제1항의 잔여 분할공제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기타 지급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중앙회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사업자·보험회사·금융회사 및 공제·보험·금융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부금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 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계약자의 질병·부상에 관한 정보

제5관 공제계약대출

제34조(대출운용원칙)

공제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담보·무보증으로 운용합니다.

제35조(대출자격)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것
2.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지 아니할 것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아니할 것

제36조(대출한도)

①공제계약대출의 한도(이하 “대출한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계약자의 납부부금 합계액
 2. 대출신청일에 계약이 제7조(계약해지)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4조(해약환급금)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에상액을 차감한 금액
- ②공제계약대출금은 최저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합니다.

제37조(대출조건)

①공제계약대출의 기간(이하“대출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며 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하 “상환기일”이라 한다)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계약대출의 이율(이하 “대출이율”이라 한다)은 <별표5> “수취이율표”와 같습니다.

③공제계약대출의 이자는 대출실행시에 수취합니다.

④대출이율이 변경되기 전에 실행된 대출은 그 변경되기 전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에는 변경된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의 상환기일 현재 제35조(대출자격)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⑥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의 상환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38조(상환연체이자)

계약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표 5> “수취이율표”에서 정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9조(변제충당순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출금, 연체이자 및 기타 비용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40조(기한의 이익 상실)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 절차 없이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1. 제7조(계약해지)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2. 제17조(공제사유)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
3. 대출한도의 범위 안에서 2건 이상의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타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때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때
5.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중앙회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단체보험의 가입)

①중앙회는 계약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에 계약자가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조건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은 공제계약일 24시부터 탈퇴일(공제사유 발생일 및 공제계약의 해지일을 말합니다)까지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은 부금월액의 150배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가 정합니다.
3. 기타 보험계약조건은 중앙회가 정하며 보험기간 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부금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체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폐업·사망공제금) (약관 제18조 제2항제1호 전단)	제3란 (노령·퇴임공제금) (약관 제18조 제2항제1호 후단)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50%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50%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0%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0%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7개월 이상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아래 「차등지급이율표」 ^{*)} 의 지급이율로 부리(附利) 적립한 금액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주) 1. 차등지급이율표

번호	적 용 (부리) 기 간	지급이율
1.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15년간	기준이율 +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간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계산 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2.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공제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공제금도 변경됩니다.
3. 기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4.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별표 2>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간주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3항제1호)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30%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
간주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7개월 이상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하 이 표에서 “부리공백기간”이라 합니다)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주) 1.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공제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환급금도 변경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별표1의 기재와 같습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4. 약관 제7조제3항제1호의 간주해약사유(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여 폐업) 중 계약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된 때에는 간주해약환급금이 아닌 <별표3>“일반해약환급금표”제2란의 일반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3>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1호)	제3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2호)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3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7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9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8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61개월 이상 7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73개월 이상 8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85개월 이상 9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97개월 이상 10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9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09개월 이상 12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21개월 이상 13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2.5%	좌란 산출금액의 80%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1호)	제3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2호)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33개월 이상 14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45개월 이상 15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0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57개월 이상 16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69개월 이상 18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81개월 이상 19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193개월 이상 20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1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05개월 이상 21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17개월 이상 22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29개월 이상 24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41개월 이상 25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2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53개월 이상 26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65개월 이상 27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2.5%	좌란 산출금액의 80%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1호)	제3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2호)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77개월 이상 28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289개월 이상 30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3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01개월 이상 31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4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13개월 이상 32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4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25개월 이상 33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4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37개월 이상 34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4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49개월 이상 36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5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61개월 이상 37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5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73개월 이상 38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5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85개월 이상 39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5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397개월 이상 40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6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09개월 이상 42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62.5%	좌란 산출금액의 80%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1호)	제3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2호)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21개월 이상 43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6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33개월 이상 44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6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45개월 이상 45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7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57개월 이상 46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7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69개월 이상 48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7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81개월 이상 49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7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493개월 이상 50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8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05개월 이상 51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82.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17개월 이상 52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8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29개월 이상 540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8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41개월 이상 552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90.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53개월 이상 564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92.5%	좌란 산출금액의 80%

제1란 (부금납부월수 구분)	제2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1호)	제3란 (일반해약환급금) (약관 제24조제2항제2호)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65개월 이상 576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95.0%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77개월 이상 588개월 이하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197.5%	좌란 산출금액의 80%
계약해지한 때에 부금구분의 부금납부월수가 589개월 이상인 경우	부금구분의 납부부금의 200.0%	좌란 산출금액의 80%

- 주) 1. 위 표 제2란의 일반해약환급금은 (i)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약관§7①) (ii)개인사업자인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 출자하여 폐업(약관§7③i)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된 경우 또는 (iii)계약자가 부금을 12회 이상 연체하여 중앙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약관§7②i)에 지급합니다.
2. 위 표 제3란의 일반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약관§7②ii)의 환급금입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별표 4>

“기타 지급이율표”

구 분	적용(부리)대상	적용(부리)기간	지급이율	
청약금을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청약금 (약관 제1조제5항)	청약금을 받은 기간	기준이율	
청약철회 신청을 한 경우	청약금 (약관 제2제2항)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후 청약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	기준이율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금납부액 (약관 제6조제3항)	부금을 받은 기간	기준이율	
간주해약사유 또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계속 부금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	부금초과금액 (약관 제16조)	부금초과금액을 받은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간	기준이율의 1/4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 (약관 제30조제3항)	해약일 다음 날부터 해약환급금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간	기준이율의 1/4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약관 제30조제3항)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간	기준이율의 1/4
		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할공제금 (약관 제31조제5항)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기준이율의 1/2
			1년 초과 기간	기준이율의 1/4

구 분	적용(부리)대상	적용(부리)기간	지급이율
공제금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분할공제금 (약관 제31조제5항)	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분할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지급월이 미도래한 분할공제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잔여 분할공제금 (약관 제32조제2항)	분할공제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직전 분할공제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의 1/2
		일괄지급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일괄지급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1%

1.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공제공시」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지급이자도 변경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별표1의 기재와 같습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4.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합니다.
5. 계약자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5>

“수 취 이 율 표”

구 분		적용(부리)대상	적용(부리)기간	수취이율
부금 연체 이율	부금을 연체한 후 납부한 경우	연체부금 (약관 제14조)	부금납부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연 4.0%
대출 이율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 (약관 제37조 제2항)	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대출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3.0%
상환 연체 이율	계약자가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대출금 (약관 제38조)	대출금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기준이율 + 연 5.0%

- 주) 1. 기준이율은 매년 1월 1일에 중앙회가 정하며(매 1년간 확정 적용됩니다), 「소상공인경제공사」 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기준이율이 변경되면 수취이자도 변경됩니다.
2. 수취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3. 납부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납부기일 또는 상환기일로 합니다.